

군포도시공사 제2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감사규정」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1년 3월 10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65호

군포도시공사 감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

□ 개정이유

- 감사업무 시 회피에 대한 사항이 규정에 없어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음
-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감사 수행 시 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 훼손과 독립성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감사업무의 회피에 대한 규정 신설

- ☐ 개정규정안 : 별첨
- 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☐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- ☐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- ☐ 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군포도시공사 감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

군포도시공사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감사업무의 회피 등)

제7조의2(감사업무의 회피 등)를 신설하고 아래와 같이 3개 조항을 둔다.

- ① 안전감사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감사대상이 되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
 - 2. 감사대상이 되는 부서(팀)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·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
 - 3. 그 밖의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-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안전감사팀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관련 감사업무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안전감사팀 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미래기획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미래기획부장 이 현 동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황 기 성 (390-7606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신설>	<u>제7조2(감사업무의 회피 등) ① 안전감사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</u> <u>1. 감사대상이 되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</u> <u>2. 감사대상이 되는 부서(팀)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·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</u> <u>3. 그 밖의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</u> <u>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안전감사팀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관련 감사업무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안전감사팀 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.</u>	